

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I. 제출자

-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5월 10일 이천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, 2003년 5월 1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.

II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 17624호) 부칙 제3조 제3항에서 6개월 연장 가능토록 규정(2002년 6월 10일)
-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2월 13일 6개월 연장 승인

III. 검토내용

1.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 정원과 불 부합한 현원(고용직 4명)에 해당 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 협의됨에 따라
- 협의 기간까지 대상자들이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정원과 불 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 존속기한 연장 (2002년 7월 24일 공포된 부칙 제2항)
 - 2003년 2월 28일(현행)⇒2003년 8월 31일(6개월 연장)

3. 검토의견

-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, 그동안 정원을 초과하여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, 본 조례 부칙 제2항에서 경과조치로 2003년 2월 28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
- 현행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2월 13일 승인됨에 따라 2003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